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2. .

제 안 자 : 국방위원장

수정이유 및 수정주요내용

공무원의 보수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매년 인사혁신처에서 직무의 특성과 책임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고 있음.

국방부장관이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의 실태조사 시 군인의 동일 민간 집단과의 보수격차를 비교·분석하여 그 조사결과를 군인복지기본 계획에 반영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 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군인에 대한 적절한 보수기준을 산정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수정하려는 것임.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에 포함된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안 부칙 제1조 중 “6년”을 “1년”으로 한다.

안 부칙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군인 보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이 최초로 실시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7조(봉급) ① ~ ③ (생략) <u><신설></u>	제7조(봉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국방부장관은 5 년마다 군인의 보 수를 민간 동일 집 단의 보수와 비교 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를 공개하여야 한 다.</u>	제7조(봉급) ① ~ ③ (개정안과 같음) <u>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 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 교하는 군인 보수 에 관한 조사를 포 함하고, 그 조사 결 과를 「군인복지기 본법」 제6조에 따 른 군인복지기본계 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u><신설></u>	<u>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봉급 액의 산출기준을 정할 때에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 과를 반영하여 적 정한 산출기준을</u>	<u>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 에 포함된 군인 보 수에 관한 조사 결 과를 활용하여 군 인의 보수기준 산 정에 관하여 인사</u>

	<u>산정하여야 한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이 법</u> <u>은 공포 후 6년</u> <u>이 경과한 날부</u> <u>터 시행한다.</u> <u>제2조(군인 보수 실태</u> <u>조사에 관한 적</u> <u>용례) 제7조제4항</u> <u>의 개정규정에</u> <u>따라 최초로 실</u> <u>시하는 실태조사</u> <u>는 이 법 시행일</u> <u>이 속한 연도의</u> <u>다음 연도에 실</u> <u>시한다.</u>	<u>혁신처장과 협의한</u> <u>다.</u> 부칙 <u>제1조(시행일) -----</u> <u>-----1년--</u> <u>-----</u> <u>-----.</u> <u>제2조(군인 보수 조사</u> <u>에 관한 적용례)</u> <u>제7조제4항의 개</u> <u>정규정에 따른</u> <u>군인 보수에 관</u> <u>한 조사는 이 법</u> <u>시행 이후 국방</u> <u>부장관이 최초로</u> <u>실시하는 「군인</u> <u>복지기본법」 제7</u> <u>조에 따른 실태</u> <u>조사부터 적용한</u> <u>다.</u>
--	--	---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황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907
----------	------

발의연월일 : 2024. 11. 27.

발 의 자 : 황 희 · 정성호 · 추미애
김준형 · 김병주 · 이건태
허 영 · 박선원 · 성일종
안규백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리나라 국군의 간부 획득률이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이에 반해 희망 전역자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음. 간부 획득 감소와 유출 확대 문제의 주요 사유로 경제적 유인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현행법은 군인의 봉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공무원에 대한 보수를 규정하는 「공무원보수규정」에서 군인의 봉급을 정하고 있음.

심지어 직업 군인들은 일반공무원에 비해 보수를 더 낮게 받고 있어 직업 군인인 간부들에 대한 보수와 보상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인상 정책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특히 미국 국방부는 군인에 대한 보상 평가서를 매 4년 주기로 발간(QRMC, Quadrennial Review of Military Compensation)하여 군인

보상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군인’과 비슷한 수준의 민간의 ‘동일한 집단’ 간 보상 차이를 비교하여 최소 70분위 이상을 유지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음. 실제로 2020년 발간한 자료에는 민간과 비교하여 일반 사병 84~85분위, 장교 76~77분위 보상을 유지함으로써 군인 유출 방지와 획득률을 유지하는 데 활용하고 있음.

따라서 저출생으로 인하여 현역병 징집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방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하여 군 간부를 신규 획득하고 현행 인력의 유출을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군 간부에 대한 보상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은 5년마다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군인의 봉급액 산출기준 산정 시 적절하게 반영하도록 하여 군인의 보수 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군 복무를 위한 유인을 확대함으로써 안정적인 군 전력 유지 및 운영 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제5항 신설).

군인보수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보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조사에 포함된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군인 보수 조사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는 이 법 시행 이후 국방부장관이 최초로 실시하는 「군인복지기본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봉급) ① · ② (생 략)	제7조(봉급) ① · ② (현행과 같 음)
<u><신 설></u>	<u>④ 국방부장관은 「군인복지기 본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에 군인의 보수를 민간 동일 집단의 보수와 비교하는 군인 보수에 관한 조사를 포함하고, 그 조사 결과를 「군인복지기 본법」 제6조에 따른 군인복지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u>
<u><신 설></u>	<u>⑤ 국방부장관은 제4항의 실태 조사에 포함된 군인 보수에 관 한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군인 의 보수기준 산정에 관하여 인 사혁신처장과 협의한다.</u>